

< 소규모 펀드 공시 사항 I >

발생기간: 2017.8.1~2017.8.31 공시일: 2017.9.1

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미만인 소규모 펀드 리스트입니다.
해당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단위:원)

협회코드	공시대상 펀드명	확인일자	원본액	순자산총액	기준가
K55302BU0057	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 C-Pe	20170803	1,000	1,003	1,003.00
K55302BU0081	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자신탁[H](주식-재간접형) C-P2e	20170803	602,000	603,183	1,001.97
K55302BU0073	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Class C-Pe	20170803	1,000	1,006	1,006.00
K55302BU0099	베어링 차이나 셀렉트 증권투자자신탁[UH](주식-재간접형)Class C-P2e	20170803	2,010	2,022	1,005.97

* 법 시행령 제93조3항 5호에 해당하는 경우[소규모펀드(1월)여부 공시]

* 자본시장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< 소규모 펀드 공시 사항 II >

발생기간: 2017.8.1~2017.8.31 공시일: 2017.9.1

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미만인 소규모 펀드 리스트입니다.
해당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(단위:원)

협회코드	공시대상 펀드명	확인일자	원본액	순자산총액	기준가
없음					

* 법 시행령 제93조3항 4호에 해당하는 경우[소규모펀드(1년)여부 공시]

* 자본시장법 제 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.